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이성배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528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3. 29.

라. 회부일자 : 2019. 4. 3.

2. 제안사유

-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0조제2호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4. 8 ~ 2019. 4. 15

○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)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‘심신의 장애’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오해 될 수 있어, 이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수정하여 장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¹⁾

현행 법령 등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로 “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”, “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있는 경우” 등을 들고 있음

- 법제처 자료²⁾에 따르면 ‘심신쇠약’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

1) 제6조(위원회의 설치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(非違)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) 법제처 법제소식(2015.12), 법령 입안 심사 기준

가.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 관련 의견

-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,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로 ‘심신장애’, ‘질병’, ‘심신쇠약’ 등이 있는바,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‘심신장애’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※ ‘심신쇠약’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므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, 위촉된 위원이 ‘국외체류’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표준안 제3호의 ‘직무태만·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, 입법모델과 같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“심신장애”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.

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며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에 따른 직무수행 불가능의 경우 “심신장애”로 규정을 통일하도록 한 바 있어, 건강에 대한 해촉사유를 명기할 경우 “심신장애”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임

- 다만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에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’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할 수 있는 조항이 자칫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잘못 해석 될 우려가 있어 ‘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수정한 바 있고³⁾

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조례 중 “장애”가 “직무수행”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기에 “장애”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권고토록 한 바 있음⁴⁾
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‘장애’ 용어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

3) 국가인권위원회법 신구법 비교

[법률 제12500호, 2014.3.18, 일부개정]	[법률 제14028호, 2016.2.3, 일부개정]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----- ----- -----, -----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----- ----- -----.

4)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 요청(시 조례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), 인권담당관 -11288(2018. 11. 2)